

# 환경친화적 정보공시를 위한 법적 과제

강 정 혜\*

## 차 례

- I. 서론
- II. 환경 정보의 공시현황
- III. 환경친화적 정보공시를 위한 법적 과제
- IV. 결론

## [국문초록]

환경 영역에서의 법적 규제 방식은 종래의 명령과 통제라는 직접적 방식에서 금융시장을 통한 규제방식, 시장을 통하여 기업들이 경제규제를 준수하게끔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 그리고 각종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방식 등의 간접적 방식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 중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의 예로서는 기업의 환경 위반 사항이나 환경 준수사항 등에 관한 관련 행정청의 정보공시나 환경 관련 정보를 재무정보 등에 포함시켜 공시하도록 증권 관련 법령에 법제화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제적 환경정보 공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증권 관련 법규상으로 환경정보 공시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환경규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환경정보 공시제도를 증권관련 법령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강제할 것인지 여부, 공시되는 정보의 범위, 그리고 그 공시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변호사

## I. 서론

오늘날 환경은 단순히 환경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환경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바,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환경적 이슈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이 위치하고 있는 중요성으로 인하여 현재 환경과 관련된 쟁점은 경제성장, 금융, 산업, 경영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중첩되는 지위를 점하고 있는 쟁점이기도 하다.

환경에 대한 논의는 환경을 보호·보존하고 증진한다는 직접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회 주체들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통하여 환경을 보호·보존하고 증진한다는 간접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 중 후자의 관점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관점이다. 환경적 의무를 위반한 주체에 대한 법적 규제와 통제의 형식으로 전통적으로 법률이 기능해온 탓에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법률 규정 형식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법적 규제와 통제 중에서 “보다 더 간접적인 방법”의 법적 규제와 통제를 통하여 환경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바, 정보공시를 통한 환경 규제와 통제의 문제가 그것이다. 사실 자본주의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기업의 활동은 그 자체로서 환경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활동에 대하여 직접적 규제 형식의 법적 통제를 가하는 것보다 자본시장의 중심인 증권시장에서의 기업 공시제도를 이용하여 환경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1960년 내지 1970년대에 환경규제(environmental regulation)을 강화하면서 정부가 직접 「명령과 통제(Command and Control)」의 방식을 사용하였는 바, 규제를 강화하면 비용이 치솟기 마련이고 반대로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들이 환경법규를 지키지 않아 이 방식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sup>1)</sup> 또한 공해(公害)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이 공해를 야기한 기업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정부에 의하여 적발되면 벌금을 내게 되는데, 기업들로서는 이러한 형식의 비용 지출이 정부 기준에 맞는 공해방지시설을 갖추는 것보다 더 저

1) 박현일, 환경공시에 관한 국제기준의 강화와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기업법연구 제15집, 2003, 317-318면.

비용이라는 점을 알고 당초의 입법의도와 규제의 목적과 달리 행동하였기 때문에 「명령과 통제(Command and Control)」방식의 규제 효과는 제한적임이 드러났다.<sup>2)</sup> 그리하여 미국은 정부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것 외의 다른 간접적인 방식을 도입하게 되는데, 금융시장을 통한 규제방식<sup>3)</sup> 또는 시장을 통하여 기업들이 경제규제를 준수하게끔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sup>4)</sup>, 그리고 각종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의 예로서는 기업의 환경 위반사항이나 환경 준수사항 등에 관한 관련 행정청의 정보공시나 환경 관련 정보를 재무정보에 포함시켜 공시하도록 증권 관련 법령에 법제화하는 방식 등이 그것이다.<sup>5)</sup>

이 중, 관련 행정청이나 기업의 공시제도를 통하여 환경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은 국민의 알 권리의 확립과 정보공개청구권이 확대되는 오늘날의 추세와도 부합한다. 사실 기업의 환경 관련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의 존립이나 영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 스스로 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 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미국과 달리 증권 관련 법규상으로 직접적·명시적으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환경보고서 등의 형식으로 환경보호나 환경 관련 기부 등의 활동을 공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유용한 정보들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어 엄밀한 의미의 환경 정보 공개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해당 기업에 유리한 정보이든 불리한 정보이든간에 일정 범위의 환경

2) 박현일, 전계 논문, 318면.

3) 은행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하거나 투자할 경우 환경규제를 심사요건으로 하거나, 일명 “Super fund 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1980: CERCLA)에 의하여 은행이 기업의 토지 등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그 은행에 대하여 환경오염 복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이 그 예이다.

4) 미국에서 1990년 개정된 대기정화법에 의하여 규정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도 정화시설의 운영자와 거래를 하여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예이다. 이는 연방법원의 셰브론 사건(*Chevron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467 U.S. 837(1984))에서 비롯되었는 바, 환경단체인 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가 셰브론사를 제소한 이 사건의 쟁점은, 1977년 대기정화법(Clean Air Act: CAA)에 의하여 대기 중 공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설정한 연방환경청(EPA)의 기준이 미흡하다는 것이었는데, 연방법원은 공장의 일부 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더라도 나머지 시설에서 배출량이 감소하면 전체적으로 상쇄된다는 이유로 연방환경청(EPA)의 조치를 지지한 바 있다.

5) 박현일, 전계 논문, 318-320면.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알권리의 충족이라는 면에서 중요하며 이와 같이 공시된 환경 관련 정보들만이 간접적인 환경규제의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상장법인의 경우 재무정보에 포함된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시되어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공시의 방식에 있어 어느 정도의 요건을 요구하고 이를 입법화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보다 전문적이고도 면밀한 접근이 요구된다.

## II. 환경 정보의 공시<sup>6)</sup> 현황

### 1. 우리나라

#### (1)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 이전에는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금융감독위원회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하여 증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나누어 각각의 공시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공시제도 하에서는 공시해야 할 정보 중의 하나로서 환경 관련 정보를 명확히 특정하여 공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유통시장 공시제도 하에서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으로는 “재무에 관한 사항 및 이에 관한 부속명세”, “위 사항 외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감위가 정하는 사항”(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 2 제2항 (7), (9)참조)을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금감위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72조는 위 사업보고서에 대한 첨부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증권거래법 등을 통합하여 2009. 2. 4. 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2009. 2. 4. 부터 제정·시행된 「증권

6) 여기서는 증권 관련 법상의 “공시”에 한정하지 않고, 환경 정보 “공개(disclosure)”의 의미로도 사용하였다.

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sup>7)</sup> 등도 공시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이 포괄적인 의미를 사용하여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환경 관련 정보를 명시적으로 공시의 요건으로는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제1항은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단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청약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만일 환경 관련 정보가 거짓으로 기재되었다거나 중요사항인데도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았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간접적으로 공시가 강제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직접적인 공시 방법은 아니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제의 공백을 제거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경제적 실질이 금융투자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공백이 있었는데 각종의 금융투자업을 위 법률에 망라함으로써 통합적으로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특히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로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에 대한 공시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던 각종의 금융거래도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시제도의 적용대상으로 되었다는 점에서 유의할 만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2004년부터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기업들에게 자발적 작성을 권고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또한 대기업들은 위 환경보고서에서 더 나아가 자발적으로 지속경영가능보고서(지속가능성보고서 또는 CSR보고서라고도 불리운다)도 작성하고 있다.<sup>8)</sup>

7) 금융위원회고시 제2009-14호, 제2009-41호.

8) 환경부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과 기업의 지속경영가능보고서와의 연계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아시아나 항공과 삼성전기 등은 환경보고서로 시작하여 지속경영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지속경영가능성 보고서 중 환경 부문에 대한 내용은 GRI G3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있다(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시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활용 기업). ②한국중부발전 등은 지속가능경영

## (2) 환경부 2007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환경부는 기존의 2004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에서 국제동향을 반영하고 실무자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내용을 개정한 2007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2007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의 발간 배경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계화가 진전됨과 동시에 환경과의 영향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지금까지 규정 대응 중심의 환경보전에서 자발적인 환경경영으로의 인식변환이 요구되고 있고, 기업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환경 경영 정보를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한 투자 의사 결정시 환경이 고려요소로 등장함으로써 환경보고서가 기업 평가 도구로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sup>9)</sup>의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 라인 G3과 함께 일본의 환경보고 가이드라인 2007이 공표된 점도 수정에 영향을 주었다.<sup>10)</sup>

2007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은 1. 개요, 2. 환경비전 및 전략, 3. 환경경영시스템, 4. 환경영향 및 성과, 5.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6.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4. 환경 영향 및 성과의 항목이 자세한데, 이에는 자원사용·용수사용·에너지사용·기후변화 대응·오존층파괴물질 사용 및 배출·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토양오염관리·환경영향평가·환경친화제품·환경친화적인 수용·보건 안전·소음 진동·유해화학물질관리 항목이 들어 있고 법규 준수 항목은 5.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에 속해 있다. 이에서 보듯이 일부 항목은 GRI 가이드라인 G3과 유사하다.<sup>11)</sup>

## (3) 소결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제는 환경정보의 공시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

보고서와 환경보고서를 동시에 발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환경경영정보에 대한 핵심만 기술하고 환경보고서에서 이를 보다 강화하여 환경성과를 자세히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③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하이닉스반도체, GS과워, LG생활건강 등은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환경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더 자세한 것은 환경부, 2007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6면 참조.

9) 후술하는 3. GRI의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 참조.

10) 환경부, 2007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3면

11) 자세한 것은 환경부, 2007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표1] 환경부, GRI G3 가이드라인 비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와 같은 규정이나 일반적인 회계기준의 원칙에 따라 환경 정보의 공시가 간접적으로 강제될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환경부의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등에 기초하여 환경 관련 활동이나 환경 경영성과 등의 환경 정보를 담아 “환경보고서”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의적이고도 임의적인 행위일 뿐이다. 그러므로 작성과 발간도 임의적이며, 위 보고서에 포함되어 공시되는 항목도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는 것일 뿐 요건으로 강제화되어 있지는 않다.

오늘날 미국 및 유럽을 비롯한 금융 선진국의 금융기관들은 기업 여신을 공여함에 있어 환경위험과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환경위험으로 발생한 자본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을 확보하여야 하고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평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직접적으로 환경친화적 기업에 투자하는 그린 펀드 등이 등장하여 활발하게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은 기업의 환경 정보 공개 내지 공시를 필수 요건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는 이제 기업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지속가능경영(Sustainability Management)을 요구하는 것이 대세이다.

이와 같이 변화된 기업 환경이나 금융환경 등은 환경친화적 정보공시가 기업 스스로의 임의적이고 자발적인 동기로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 투자자,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들이 당해 기업의 환경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하게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는 환경 정보 공시가 강제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될 것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제 환경정보 공시의 강제화를 위한 법적 검토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2. 미국 상장기업의 환경 정보 공시제도

### (1) 서론

미국 증권법은 공시규제를 통하여 증시 투자자에 대하여 적절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공시하고자 하고 있다. 미국 증권법은 기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필요

한 “중요한” 정보 일체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는 일반적 공시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 중요한 정보의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판례 등에 의하여 확립되어 온 바 있다. 한편 미국은 감독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 Exchange Commission)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정보를 공시하게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라 함)가 제정한 규칙 Regulation S-K에서는 상세하게 환경 정보의 공시 내용을 특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환경 관련 공시가 적극적으로 도입된 계기로는 환경단체인 NRDC(Natural Resources Defence Council, Inc.)가 SEC를 상대로, 연방환경정책기본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이 모든 연방기관의 규제 감독조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도록 고려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데도 SEC는 이와 달리 환경보호조치 방안을 공시 규제조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미국은 Sarbanes-Oxley법의 내부 통제관련 규정, 그리고 일반회계기준 등을 통하여 환경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증권 관련 법령에서 상장기업에 대하여 환경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재무적 정보<sup>12)</sup> 외에도 비재무적 정보인 환경 정보의 공시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증권 관련 공시제도는 미국에서 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만 적용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기관이나 기업이 미국에서 증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미국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증권거래를 하는 경우 미국법의 역외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증권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증권규제 분야나 증권공시의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미국 국민이 어디에 있더라도 그들을 보호한다는 국민 기준(national approach)의 사고에 의해 폭넓은 역외 적용을 인정했으나 근래에는 역외적용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sup>13)</sup> 예를 들어 미국법은 당해 종류의 증권을 보유하는 미국 거주자가 3백명 이상이면 상장 여부와 관계 없이 SEC에 등록하고 계속 공시를 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Rule 12g-1, Rule 12g3-2 (b)), 외국 발행 기업에 적용되는 공시의무는 미국의 발행

12) 재무적 자료의 공시는 SEC가 제정한 규칙 Regulation S-X에 의하여 규율되는 바, Regulation S-X는 공시를 위하여 제출되어야 하는 재무제표의 형식과 내용을 규정하는 단일 회계 규정이라 할 수 있다.

13) 김건식, 증권거래법, 두성사, 2006, 515-516면.



자에 비하여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sup>14)</sup> 이하에서 미국 상장기업의 환경 정보 공시 규제 현황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 (2) 공시규칙 Regulation S-K

위에서 본 증권법상의 일반적 공시 의무 규정 외에, SEC가 제정한 규칙 Regulation S-K은 상세하게 환경 정보의 공시 내용을 특정하고 있다. Regulation S-K은 SEC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s)와 투자자들에게 배포하는 사업설명서(prospectus)에 기재하여야 하는 비재무적 정보의 작성 및 양식에 관한 규정이다. 이 중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와 관련된 대표적인 규정으로 Item 101(Description), Item 103(Legal Proceeding), Item 303(Management Discussion and Analysis)을 들 수 있다.

Item 101(Description)은 기업의 영업에 관한 사항 중 의무적 공시 항목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한 항목으로서 환경법을 준수 내지 위반함에 따라 당해 기업이 입을 수 있는 자본적 지출, 이익 및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들고 있다. Item 103(Legal Proceeding)은 계류 중인 중요한 법적 절차에 대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다. 그러므로 해당 기업 또는 자회사에 제기된 또는 제기될 우려가 있는 환경 관련 소송은 공시되어야 한다. Item 303(Management Discussion and Analysis)은 종합적인 공통항목으로서 경영진이 회사의 재정상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경영자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토론한 보고서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은 명시적으로 환경 관련 분석 및 보고서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에 의하여 환경 관련 분석 및 보고서도 포함된다고 이해되고 있다.

### (3) 기타 환경 정보 공시 규제 현황

미국은 재무제표상으로도 일반회계원칙(GAAP)에 따라 당해 기업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조건, 상황, 사건 등에 대하여 우발적 채무로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을 때 그 발생가능성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공시규칙 Regulation

14) 김건식, 전게서, 516면.

S-X). 이에 근거하여 환경책임은 금액으로 수치화하여 공시하게 된다. 또한 미국 증권법 등에 규정된 사기 방지 규정은 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부실 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시에는 증권법상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2002년 기업의 회계부정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Sarbanes-Oxley 법을 공포하였다. 이 법은 단행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법의 일부로 포섭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 내용으로는 상장회사의 경영자로 하여금 회사상태의 중요한 변화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 절차를 따르고 있음을 인증하도록 요구하면서, 위반시에는 부실공시한 회사 최고 경영자와 재무임원에 대하여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묻고 있는데, 환경 공시 또한 경영진이 인증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영진은 다른 공시사항과 마찬가지로 환경 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주의를 다할 것이 요구된다.<sup>15)</sup>

위에서 본 미국의 일반회계원칙(GAAP)(공시규칙 Regulation S-X)이나 일반적인 사기방지조항 그리고 Sarbanes-Oxley 법은 직접적인 문언으로 환경 관련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결과적으로는 환경 관련 공시의무가 간접적으로 강제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유럽연합(EU)

유럽은 체르노빌 사고 등으로부터 환경 정보의 부족이 끔찍한 재앙을 불러 일으킨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부터 환경정보의 공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sup>16)</sup> 그러나 유럽은 일반인의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확립하거나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감사(environmental auditing)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환경공시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은 1990. 6. 7.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 지침(Directive on the access to information relating to the environment)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환경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강력한 환경보호의 수단이 됨을 인식한 결과이다. 또한 환경감사제는 유럽연합이 2001. 3. EU 규정으로

15) 안수현, 미국 상장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규제 - 현황과 시사점, 상사법연구 제26권 3호, 2007, 7-8면.

16) Dennis Campbell, *Environmental Hazards and Duties of Disclosure*, Graham & Trotman, 1994, 46면.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소속국가들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인환경감사관으로부터 마치 재무서류를 감사하는 공인회계사처럼 환경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받는 제도인 바, 법으로 강제되지는 아니하고 어디까지나 기업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참여하는 제도이다.

#### 4. GRI의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sup>17)</sup>는 1997년 보스톤에 근거를 둔 비영리단체인 CERES가 태동시킨 환경 관련 민간단체(NGO)인 바, 1999년 유엔환경계획(UNEP)가 구성원(partner)으로서 참여함으로써 전세계적인 활동과 지원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GRI는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신뢰할만한 지속가능보고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보완하여 전세계적인 적용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기업, 시민사회, 노동계 그리고 전문가 집단 참여자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GRI의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G3 버전)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보고서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 가이드라인 중 제2부(표준공시안)의 환경편을 보면 (1) 원료·에너지·용수·생물다양성·대기배출물, 폐수 및 폐기물·제품 및 서비스·법규준수·운송·전체로 환경부문을 나눈 다음 위 각 환경부문의 경영방식을 간략하게 제시하고(경영 방식 공시) (2) 위 환경부문과 관련된 성과에 대한 전사적 목표 및 성과를 기술하며(목표 및 성과), (3) 위 환경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규정하는 전사 수준의 정책 또는 공용 도메인에서 해당 정책을 찾을 수 있는 위치를 설명하고(정책), (4) 위 환경부문에 대해 운영책임을 갖는 최고위 직책을 소개하거나 고위직에서 이 운영책임을 어떻게 분담되는가를 설명하며(조직 내 책임), (5) 위 환경부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식을 확산하는 절차(교육 및 의식 제고), (6) 모니터링 및 시정/예방조치 관련 절차(모니터링 후속 조치) 등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위 (1)의 각 환경 부문<sup>18)</sup>마다 각각의 환경 성과 지표를 명시하고 있다. 예

17) <http://www.globalreporting.org/Home>

를 들면 위 환경 부문 중 원료 항목에서는 중량 또는 부피 기준 원료 사용량(EN1), 재생 원료 사용 비율(EN2)을 규정하고 있고, 용수 항목에서는 공급원별 총 취수량(EN8), 취수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용수 공급원(EN9), 재사용 및 재활용된 용수 총량 및 비율(EN10)을 규정하고 있고, 법규 항목에서는 환경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 및 비금전적 제재건수(EN28)를 규정하고 있다.

### III. 환경친화적 정보공시를 위한 법적 과제

#### 1. 총설

이상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의 환경 정보 공시 현황, GRI의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살펴 보았는 바, 미국의 경우 환경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법규로서 직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경영 내지 지속가능경영을 하계끔 촉진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GRI의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은 환경 정보 공시에 있어 전세계적인 준거의 틀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우리나라 환경부의 2007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이나 일본의 환경보고 가이드라인 2007가 위 GRI의 지속가능보고서를 참조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특히 지속가능경영이 오늘날의 주요 경영 목표가 된 지금에 있어, 이제 기업의 환경 책임은 단순히 부분적인 친환경적 제조 공정이나 유해물질 배출 억제와 같은 문제를 떠나 기업 경영 전체의 관점에서 모든 요소, 분야에 걸쳐 친환경적 요소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국면에 와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기업의 환경친화적 정보공시가 임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일정하게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는 방식의 환경 정보 공시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18) 중고딕체로 표시한 부분임. 한글 번역본에는 환경측면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나 본 고에서는 환경부문이라고 지칭하였다.

## 2. 법적 과제

### (1) 환경 관련 정보공시의 법제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환경 관련 정보의 접근권 보장이나 기업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작성, 발간되는 「환경보고서」나 「지속경영가능보고서」등만으로 오늘날의 기업에 대한 환경 정보 수요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충족시키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009. 2. 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공백을 제거하고 통합적인 규제의 틀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위 법률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금융위원회고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등에 환경 정보의 공시를 언급하여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법령 등에서 공시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명시하고 있는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이 포괄적인 의미를 사용하여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환경 친화적 정보 공시의 목적 달성에는 미흡하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제1항과 같은 규정형식은 사후적 통제 방법에 해당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환경정보에의 접근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을 비롯한 금융 선진국의 금융기관들은 기업 여신을 공여함에 있어 환경위험과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하고 고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진국의 금융기관들에게 환경위험에 대하여도 일부 책임을 지우고 있는 단계에 도달해 있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환경친화적 기업에 투자하려는 SRI 펀드나 그린펀드와 환경 펀드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의 환경친화적 정보공시가 간접적 강제 방식으로도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일정하게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는 환경 정보 공시가 법제화될 것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 (2) 환경 관련 정보공시의 강제성

환경 정보의 공시가 법제화될 경우, 이를 의무로서 강제할 것인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다. 강제적 기업공시 제도(mandatory corporate disclosure system)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공시 철학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sup>19)</sup>이 있어 왔다.

미국의 경우, 1933년, 1934년 그리고 1964년에 걸쳐 의회에 의하여 현재의 강제적 기업공시 제도를 확립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즉 최근 금융이론가들을 중심으로 “회사 경영자들에게는 투자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할 충분한 유인책(incentives)이 주어져 있으므로” 강제적 기업공시 제도(mandatory corporate disclosure system)는 불필요하다는 논의가 그것이다.<sup>20)</sup> 즉 외부의 주주와 회사의 경영자들은 양쪽 모두 경영감시나 인센티브 시스템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사 가치가 더 증가할 경우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중요 정보의 자발적인 공개는 경영자가 외부 주주의 이득을 편취하거나 상충되는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므로, 결국 자발적인 중요 정보의 공개는 경영자와 외부 주주간의 표준적인 통제장치의 특성(a standard feature of the monitoring contract)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논리가 그것이다.<sup>21)</sup>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중요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치지 않고 있는 증권 사기 사건이나 강제적인 기업공시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증권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또 위 이론은 공시에 관한 기업의 의사결정이 전형적으로 증권의 시장가격과 같은 재무적 요인에 대한 고려의 결과만으로 이루어진다는데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비현실적인 가정이다.<sup>22)</sup> 그러므로 환경 정보의 공시는 의무로서 강제되는 방식으로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 미국에서의 공시의 강제성 여부에 관한 논쟁에 대하여는, Louis Loss and Joel Seligman, *Fundamentals of Securities Regulation(5th ed.)*, Aspen Publishers, 2004, 32-45면의 “C. THE BATTLE OF THE PHILOSOPHIES” 참조.

20) Louis Loss and Joel Seligman, 전계서, 41면.

21) Louis Loss and Joel Seligman, 전계서, 42-43면.

22) Louis Loss and Joel Seligman, 전계서, 43-44면.

### (3) 환경 관련 정보공시의 범위

이와 같이 환경 관련 정보 공시가 법제화될 경우 구체적으로 법령이 어느 정도의 환경 관련 정보 공시를 요구할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우선 과거 기간 동안의 재무적 정보나 이미 종료된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한 정보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에 의하여 생성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수익예측이나 장래의 경영계획과 관련된 예측정보는 추정과 예측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그 정보의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아 공시의 대상으로 적절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SEC는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의 유가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s) 공시의 범위와 관련하여 과거의 재정상황이나 현재 또는 종료된 활동 정보만<sup>23)</sup>을 공시해야 한다는 엄격한 입장을 견지하여 왔으나 1970년대 들어 이러한 입장에 변화가 생겨, 1978년에는 자산평가나 장래의 경제적 전망, 경영 계획과 같은 예측정보(forward-looking information)<sup>24)</sup>도 공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고 이러한 입장이 반영된 것이 공시규칙 Regulation S-K의 Item 10이다.<sup>25)</sup> 과거나 종료된 상황의 정보와 달리 미래의 수익전망과 같은 예측정보는 합리적 근거 없이 전망을 부풀려 투자자들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사기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SEC는 1979년 세이프 하버 룰(Safe Harbor Rule)을 제정하여 미래에 대한 예측이 합리적 근거 하에 성실하게 행하여진 경우 등 사기성 신고(fraudulent statements)가 아닌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 있다. 투자자 등이 모든 가능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측정보도 공시의 대상에서 포함시키되 투자자 등을 현혹시키기 위해 기망적 전망치를 공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를 증권사기행위(기망적 기재)의 한 범주로 보아 법적 규율이 가해지는 방식으로 예측정보의 공시 문제를 다루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3) David L. Ratner, *Securities Regulation in a Nutshell*(3rd ed.), West Publishing Co., 1988, 38면에서 이러한 정보를 "hard information"이라 지칭하고 있다.

24) David L. Ratner, 전계서, 39면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soft information"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25) David L. Ratner, 전계서, 38-39면.

한편 공시될 구체적인 환경 정보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SEC가 제정한 공시규칙 Regulation S-K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공시규칙 Regulation S-K는 SEC에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s)와 투자자들에게 배포하는 사업설명서(prospectus)에 기재하여야 하는 비재무적 정보의 작성 및 양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중 기업의 활동 중에서 환경법 준수 내지 위반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의 자본적 지출, 수익 및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한 Item 101(Description)과 해당 기업 또는 자회사에 제기된 또는 제기될 우려가 있는 환경 관련 소송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한 Item 103(Legal Proceeding)등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GRI의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이나 환경부의 2007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중 일부 항목만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추출한 다음 이 항목들의 준수 내지 위반 사항은 “환경법 준수 내지 위반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의 자본적 지출, 수익 및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간주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 (4) 환경 관련 정보공시에 대한 감독

환경 관련 정보를 공시할 것을 강제화하는 입법조치를 취하더라도, 해당 기업들이 성실히 환경 관련 정보를 공시하였는지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물론 부실공시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령에 규정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나 관련 행정기관이 제도적으로 이를 사후에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1975년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SEC가 제기한 5,000개 이상의 행정절차 중에서 오직 3개만이 중대한 환경정보의 불충분한 보고로 인한 것이었고 이 기간 중에 SEC가 그러한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오로지 한 건에 불과하였고, 나아가 이들 4개 중의 한 건만이 1980년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환경정보공시가 SEC의 우선적인 관심사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 바<sup>26)</sup>,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환경 관련 정보 공시의 법제화 이후 그 공시 기능이

26) 한철, 정보규제와 환경정보공시 시스템, 경영법률, 제17권 1-1호, 2006, 422-423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당국의 사후적 통제장치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 기타 재무적 정보의 공시 활용 방안

재무제표상에 환경 관련 사항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조건, 상황, 사건 등이 발생하고 이는 우발적 채무로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을 경우 기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특정하여 회계원칙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IV. 결론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에 있어 환경 정보의 공시가 기업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직접적으로 이를 법제화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환경 관련 정보가 법령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결과적으로 강제되는 간접적 규제 방식으로는 환경정보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기업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작성, 발간되는 환경보고서나 지속경영가능보고서 등만으로는 일반 투자자나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하고도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환경 관련 정보가 공시되기 어렵다. 따라서 미국의 SEC가 제정한 공시규칙 Regulation S-K이 SEC에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와 투자자들에게 배포하는 사업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일정한 범위의 환경 관련 정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관련 법령에 직접적인 환경정보 공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도입의 정도에 대하여는 일반적이고도 추상적인 형식의 규정에서 더 나아가 환경부의 2007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이나 GRI의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중 일부 항목은 구체적으로 도입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의 경영 전범(典範)을 전세계적인 표준과 추세에 부합시켜 미래의 세계 일류 기업으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논문발표일: 2009. 7. 18, 수정일: 2009. 8. 14, 게재확정일: 2009. 8. 20)

## 참고문헌

- 김건식, 「증권거래법」, 두성사, 2006.
- 안수현, “미국 상장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규제 - 현황과 시사점”, 「상사법연구」, 제26권 3호(2007).
- 안수현,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제도화를 위한 시론”, 「환경법연구」, 제29권 1호(2007).
- 박훤일, “환경공시에 관한 국제기준의 강화와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기업법연구」, 제15집(2003).
- 한 철, “정보규제와 환경정보공시 시스템”, 「경영법률」, 제17권 1-1호(2006).
- \_\_\_\_\_, “환경규제와 증권규제의 결합”, 「상사법연구」, 제17권 1호(1998).
- 환경부, 2007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 Louis Loss and Joel Seligman, *Fundamentals of Securities Regulation(5th ed.)*, Aspen Publishers, 2004.
- David L. Ratner, *Securities Regulation in a Nutshell(3rd ed.)*, West Publishing Co., 1988.
- Dennis Campbell, *Environmental Hazards and Duties of Disclosure*, Graham & Trotman, 1994.
- <http://www.globalreporting.org/Home>

**[Abstract]**

Legal Issues on the Disclosur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Kang, Chung Hae

Recently environmental regulation is moving from the method by command and control to the disclosur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support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and useful way of environmental regulation to the corporation, especially. Acts referring to securities in the United States adopted the mandatory corporate disclosure system. The legislation of mandatory disclosur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including the forward-looking information and non-financial information at the securities act is encouraged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at the private sector, the corporation.

주 제 어 환경정보공시, 환경규제방식, 기업공시제도, 환경정보공시의 법제화, GRI의 지속가능보고서

Key Words environmental regulation, disclosur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securities act, information reporting, corporate responsibility